

한국농아인협회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 한국농아인협회 대상 실지감사(9.30-10.2, 10.21-10.22)를 통해 한국 농아인협회 고위간부(조남제, 정희찬, 채태기, 변승일)의 범죄혐의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제32조 제1항) 감사관은 감사 중 또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 확인 사실 개요

- ① (장애인차별) 한국농아인협회는 사·도 산하기구, 수어통역센터 등에 특정 수어통역사 섭외·출입 금지, 수어영상 제작 협조금지 지시
 - 또한, 농아인 관련 외부 기관과 모든 제반활동 금지, 수어통역사 지원금지 등을 지시하여(정희찬, 변승일)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 방해
- ② (취업방해) 한국농아인협회는 외부강사 목록을 작성하고 산하 모든 기관에 해당 강사만 섭외할 수 있도록 지시 (조남제, 정희찬, 채태기, 변승일)
 - 특정 강사만 농아인협회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한
- ③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한국농아인협회는 2021년 잡지출 예산의 75%를 사용(정희찬, 변승일)하여 조남제에게 골드바(29,805,000원 상당) 제공
- ④ (업무상 배임) 2023년 세계농아인대회의 예산운영 불투명(정희찬, 채태기)
- ⑤ (업무방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따라 수어통역 의뢰절차를 개편한다고 산하기관에 지시(조남제, 정희찬)
 -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의 공문 송부 사실 없음

□ 향후 계획(안)

- 장애인차별금지법(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근로기준법(취업방해의 금지), 형법(업무상 배임,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수사의뢰 추진 (25.11월 중)
- 감사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 의혹 추적 관리

참고1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관련 규정

구분	내용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보접근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 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

□ 사실관계 조사

- 한국농아인협회는 2022년 제3차 임시이사회(2022.4.18)를 통해 외부 단체에 농아인 참여를 금지하고, 협회 산하기구의 수어강사, 연구자들이 참여하면 관련자들을 농아인협회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의결

- 이후 시·도협회, 수어통역센터 지역본부 등에 아래 사항을 지시

- 외부 기관과의 수어영상 관련 활동 금지(미디어지원부 2022-0348, 총무부 제2022-2008)
- 특정 수어활동가의 섭외 및 출입 금지(미디어지원부 2022-0378)
- 장애인체육대회 수어통역사 지원제한(총무부 제2022-1563)
-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수어통역센터 직원 전면 출장금지(총무부 외부 제2023-01)
-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에 통역사 참여금지(총무부 외부 제2023-0235)
- 외부단체(시청자미디어재단, 초콜릿커뮤니케이션,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관련 모든 제반활동 금지(수어정책부 제2021-1529, 미디어지원부 2022-0308, 미디어지원부 2022-0405 등)

□ 수사의뢰 내용

- 변승일 전 회장이 임시이사회에서 수어통역 접근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의결한 사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변승일 전 회장과 정희찬 상임이사가 농아인관련 타 기관과의 협력을 금지하고 수어통역 접근권을 제한하도록 시·도협회, 수어통역센터 등에 공문으로 지시한 사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참고2

근로기준법 위반취업 방해의 금지

□ 관련 규정

구분	내용
(근로기준법) 취업방해 금지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조사

- 한국농아인협회는 별도 법령이나 규정없이 임의로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모든 기관에서 수어교육 진행 시 강사명단에 대한 중앙회의 승인 이후 교육을 진행하도록 제한
 - 중앙회가 승인한 강사만 강의할 수 있도록 명단을 산하기구에 공유하고, 다른 강사는 강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도록 지시하여 수어강사의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처우
- 강사 명단은 조남제 사무총장, 정희찬 상임이사, 채태기 회장, 변승일 회장의 결재를 거쳐 한국농아인협회 산하기구에 발송

< 관련공문(예시) >

문서제목	내용	비고
외부강사 초빙에 관한 주의사항 알림	수어교육 진행 시 강사명단 중앙회 승인이후 교육 실시. 승인없이 강사초빙 시 법인서류 발급 1년 제한 * (결재자) 정희찬, 변승일	한농협 미디어지원부 2022-0268
2023년도 외부강사 섭외 시 주의사항 알림	협회가 지정한 명단에 없는 강사는 섭외 불가 * (결재자) 조남제, 정희찬, 채태기	한농협 수어정책 제2023-0126호
2023년도 외부강사 명단 알림	중앙회 지정 외부강사 외 섭외 불가 * (결재자) 조남제, 정희찬, 채태기	한농협 수어정책 제2023-0143호

□ 수사의뢰 내용

- 조남제 사무총장, 정희찬 상임이사, 채태기 회장, 변승일 회장이 한국 농아인협회 중앙회가 승인한 수어강사만을 섭외하도록 하고, 다른 강사의 교육을 금지한 사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참고3

고액 선물 수령(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 관련 규정

구분	내용
(형법) 업무상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업무방해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조사

- 한국농아인협회 2021년 제7차 임시이사회(2021.6.22.)에서 채태기 부회장, 정희찬 상임이사가 조남제에게 선물을 주자고 제안
- 한국농아인협회는 2021년 제7차 임시이사회 후속조치로 골드바 (총 380g, 29,805,000원 상당) 구매를 위한 결재*를 받은 후, 골드바를 구매(세출과목 : 잡지출)하여 조남제에게 제공(한농협 총무부 제2021-1579)
* 정희찬 상임이사, 변승일 회장 결재
- 2021년 한국농아인협회 잡지출 예산은 39,641천원으로, 조남제에게 구입한 골드바 가액은 잡지출 예산의 약 75%에 해당
 -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협회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의사결정·예산집행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수사의뢰 내용

- 정희찬 상임이사, 변승일 회장이 협회의 예산으로 조남제 개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지급한 사실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남제가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협회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조남제의 위계·위력 등에 의한 것인지, 조남제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참고4

불투명한 예산집행(업무상 배임)

□ 관련 규정

구분	내용
(형법) 업무상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조사

- 한국농아인협회는 2023년 7월 제주도에서 세계농아인대회 개최
 - 협회는 세계농아인대회 행사 참가자에게 총 873,180,558원 참가비 접수
- 한국농아인협회는 세계농아인대회에서 발생한 수입을 행사 사전준비를 위해 지출한 자부담 사용액으로 이관 결정(총무부 2023-0001, 결재자 정희찬)
 - 세계농아인대회 준비를 위해 사용(2017년~2023년)한 314,289,124원을 이관 처리(총무부 내부 제2023-1617, 결재자 정희찬, 채태기)
 - 다만, 접수비 이관을 결정한 문서의 번호는 총무부 2023-0001이나, 해당 문서날짜*가 2024.3.28.로 사후 조작 가능성
 - * 문서분류번호는 제년도 001호부터 부여(문서관리규정 제3조)
- 중앙회 감사(염미경, 임승택)가 접수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적, 협회는 사실관계 오류를 주장하며 보고거부(총무부 2024-0366, 결재자 정희찬)
 - 단순한 회계연도 위반이 아닌 조직적·계획적인 예산부정 의심

□ 수사의뢰 내용

- 한국농아인협회의 세계농아인대회 행사운영 및 예산집행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행태에 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 필요
 - 정희찬 상임이사, 채태기 회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및 추가 공범 혹은 교사범의 여부

참고5

허위사실 유포(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관련 규정

구분	내용
(형법) 업무방해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조사

- 한국농아인협회는 산하기구에 수어통역서비스의 의뢰를 시도협회로 **일원화**한다고 지시(총무부 제2023-424, 제2024-024호, 결재자 조남제, 정희찬)
 - 해당 문서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는 통역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안내
 - 또한 수어통역서비스 의뢰방식을 시도협회로 일원화 하기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했다고 주장
- 다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 제154조 제3항은 수어통번역 서비스 비용을 한국농아인협회 운영비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
 - *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어통역센터에서 중앙회로 수어통역 수입 입금
 - 또한, 보건복지부는 수어통역서비스를 시도협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음
 - 이는 산하기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여 업무담당자의 오인·착각을 발생시킴으로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수사의뢰 내용

- 조남제 사무총장과 정희찬 상임이사가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문서를 산하기구에 송부하여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6

주요의혹 확인사항

구분		내용	비고
세계 농아인 대회	참가비 세부내역	○ 현장에서 접수한 참가비 중 일부는 식사비로 지출, 일부는 신한 140-011-090925로 입금했다고 답변	수사의뢰(④)
	갈라디너비	○ 협회는 신한 140-011-090925, 신한 180-012-669948 이외 별도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	
	이전년도 지출포함	○ 세계농아인대회 접수비를 대회 사전준비에 사용한 금액으로 이관하기로 결정(총무부 2023-0001)	
	정산내역 적정성	○ 접수비를 세계농아인대회 유치 및 진행관련 자부담 사용분으로 이관(총무부 내부 제2023-1617) * 중앙회 감사때도 상세자료 제출 거부	
	사전답사	○ 협회는 제주관광공사 지원이 없었다고 답변 ○ 두리함께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수의계약 금액을 한정하지 않음(제26조 제1항 제4호)	
	영화제 집단감금	○ 세계농아인대회 전일 수어로 즐기는 영화축제 진행, 다만, 감금지시 등 확인 불가	
협회의 지위 남용	시위 동원	○ 2022.6.27. 집회 참석인원에 따라 포상한다고 시도 협회에 안내(총무부 제2022-0898), 이후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여 집회 철회(총무부 제2022-1062)	22.6.27 집회는 취소 지회장에게 골드바 지급은 22.5.18 집회
	1인시위	○ 2023.10.12. 국회의원 사무실 1인시위 진행, 교육부 차관 면담을 계기로 10.19 중단(총무부 외부 제 2023-0320, 총무부 외부 제2023-0324)	
	외부기관 협조금지 외부통역사 섭외금지	○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및 장애인의 수어통역 접근 저해	수사의뢰(①)
	블랙리스트	○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명단 작성 및 통신	수사의뢰(②)
	댓글·민원 공작	○ 관련 자료 확인 불가	
이용료 수입	통역의뢰 시도협회 단일화	○ 한국농아인협회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수어통역서비스 의뢰를 시도협회로 일원화한다고 주장하나, 복지부는 해당 내용의 공문을 발생한 사실이 없음	수사의뢰(⑤)
	통역센터 수입을 협회로 세입처리	○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 제154조 제3항은 수어통역 센터에서 발생한 수어 통번역 이용료 수입을 협회 운영비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 -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11월) 추진	지침 개정 검토 위탁사업 점검
	통역사수당 수어연구소가 지급	○ 선거관련 영상수어통역사 모집 이후 계약에 관한 추가조사 및 위반 사유 등 검토	

인권침해 관리남용 등	감사명분 괴롭힘	○ 전북본부 직원들이 조남제 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①감사로 인한 휴일근무, ②촉박한 서류제출 일정, ③자료 미제출시 시군감사 하겠다는 발언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불가피한 경우 휴일근로 가능, ②타 지역본부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음, ③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직장 내 괴롭힘은 조남제의 전북본부 폭언에 대해 인정(총무부 2025-1060), 견책처분
	휴대폰검열	○ 관련 자료 확인 불가	
	법인서류 발급통제	○ 결재권자(정희찬 상임이사) 미결재	
	장애인 고용장려금 배분	○ 25.10.17 전북본부에 고용장려금 지급(총무부 2025-1204) - 직장 내 괴롭힘 조사비용(노무사) 등 공제하고 지급 * 타 시도협회는 25.7.10 지급	고용노동부 협의
	협회장 협박	○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신고(2025.9.16.)접수 및 조사 진행 중(피해자 : 전북협회장)	
양주 밀반입	양주 대리구입, 상납 등	○ 관련 자료 확인 불가	
고용 장려금	농통역사 대체채용	○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3권)에서 수어통역사 채용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채용이 어려운 경우 청각장애인통역사를 대체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 고용장려금 목적으로 악용소지가 있어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26년 지침에서 삭제 검토	지침 개정 검토
	고용장려금 목적외 사용	○ 소송비용 공제하여 협회별 지급 (총무부 2025-0813)	고용노동부 협의
	인사권남용	○ 관련 소송 진행 중(서울남부 2025가합101146)	
자격 제도 공정성	자격제도 공정성 훼손	○ 2025년 청각장애인통역사 실기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한 과목의 점수(50점)를 만점 처리(실기시험은 3과목 모두 40점 이상 득점, 총득점 평균 60점 이상 필요) -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관리 및 시험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어통역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하여야 하나 해당 위원회 미개최	절차규정 미준수
	수어 못하는 실무진	○ 한국농아인협회 인사규정은 직원의 자격기준으로 수어통역사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국가공인 자격폐지 전환추진	○ 2018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통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차등화된 자격제도 운영 필요성 제시(수어통 역사 활성화 방안 연구) ○ 2025.1.15. 협회 회의실에서 제도개선 TF 회의(위원장 이준우 강남대 교수)를 개최하여 급수제 논의 * 2018 장애인개발원 자격제도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2025.3.10. zoom 회의 개최. (1안) 기존 수어통역사는 2급으로 인정하고 1급은 재시험을 통해 취득(전문 수어통역사)하는 방안과 (2안) 새로운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1급, 2급을 나누는 방향 제시 * 공인기간 내 자격명칭 변경불가(자격기본법 제24조)	

교육 사업 수익화	보수교육 수익독식	○ 자격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자격관리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농아인협회는 외부기관의 교육품질을 신뢰할 수 없어 2025년 통역사 외부교육을 중단했으며 2026년 재개를 검토한다고 답변	
	비용 불투명	○ 수어통역센터장 소통강화 교육 등 참가비 잔액을 중앙회 계좌로 이관 ○ 2023.6.16.~6.17 보수교육에서 참가자 420명 접수비 30,000씩 납부(총 12,600,000원) - 강사비 1,920,000원은 보조금으로 지출, 자부담 지출은 19,900원에 불과(수어정책부 내부 제2023-0121)	유사사례 확인 및 교육사업을 수익화 하지 못하도록 개선요구
	과도한 교육비용	○ 교육참가비 계좌(신한 100-034-108762) 잔액을 자부담계좌(신한 100-034-108762)로 이관	
금품 살포	중앙대의원 골드바지급	○ 중앙회장 선거권을 보유한 시·도협회장, 시·군·구지 회장을 대상으로 2022.5.18. 문체부 정문인근 시위 장소에서 골드바 지급(총무부 제2022-0857) * 당시 회장인 변승일은 2023 선거 미출마	
	조남제 골드바수령	○ 조남제의 골드바 수령(약 3천만원 상당)은 통상적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움	수사의뢰③
	교육비반환	○ 2023.8월 국제교류인재양성&글로벌농아캠프 정산 증빙서류가 부실하여 재조사 필요	
	현금봉투 살포	○ 관련 자료 확인 불가	
	여행후 상납	○ 2022.11월(제주, 화신여행사), 2023.10월(치앙마이, 두리함께), 2025.4월(타이베이, 모두여행사) - 개인 상납 관련 자료는 확인 불가	
재판에 따른 임원 직위유지 관련	업무상배임 재판관련 조치계획	○ 서울남부지법 2024고정1455 피고인(정희찬, 김정선, 채태기)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2025.10.22.)	

참고7

기타 제도개선 사항(안)

구분	확인사항	조치 내용(안)
회계규정 위반	- 세계농아인대회 접수비 수입(314,289,124원)을 행사 유치 및 진행을 위해 사용한 자부담 사용분으로 이관(총무부 내부 제2023-1617) * 수사의뢰와 별도로 기관대상 처분 필요	- 회계규칙 위반 기관 경고 - 중복정산여부 지속검토 및 확인시 조치
교육의 수익사업화	- 수어통역센터장 소통강화교육, 수어통역센터 종사자교육 참가비 잔액을 중앙회 자부담 계좌로 이관(중앙수통본부 2024-0329) - 수어통역센터장 교육 등은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나, 사실상 수익사업처럼 운영	교육사업을 수익화 하지 못하도록 개선요구
직원채용 절차상 문제	- 수어통역센터 직원채용 과정에서 절차적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중앙수통본부 내부 제2023-0265) - 인사위원 정희찬은 직원채용 면접과정에서 평가항목별로 채점하지 않고 합격이라고만 기재하여 제출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고 요구
시험출제 오류	청각장애인 실기시험 오류 처리과정에서 절차(수어통역평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오류발생 과목 만점처리	기관경고 조치 및 절차준수 철저
직장 내 괴롭힘	- 조남제 사무총장이 전북본부를 방문하여 근무자에게 폭언한 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2025.9.1.) 견책 처분 결정(총무부 2025-1060) - 조남제는 2025.9.5. 사직	직원교육, 규정 정비(고충처리절차)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
선물지급 관련	- 회장 등 고위간부에 감사표시 등을 이유로 상품권 구입(총무부 2022-1362, 총무부 내부 제2023-2029, 총무부 2024-0138 등) - 지회장 등 대상으로 문체부 시위현장에서 골드바 각 3.75g 지급(총무부 제2022-0857)	- 직원대상 청렴교육 등 이수 요구 - 고가선물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준수여부 모니터링
수어통역 서비스 수익의 법인전출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 제154조 제3항은 수어통역 수입을 농아인협회, 시·도협회, 시·군·구지회 운영비로 편입 가능 규정	시설 수익금을 운영법인으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지침 개정 검토
장애인 고용 관련	수어통역사 채용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채용이 어려운 경우 청각장애인 통역사를 대체 채용 할 수 있어 고용장려금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	관련 규정 지침에서 삭제 검토